

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|
| 의 안 번 호 | 62 |
|------------|----|

제출연월일 2008. 5. .
제출자 양주시장

□ 제안이유

“양주시자치법규 일제정비 위원회”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조사에 의거 발췌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함

나. 자원봉사활동의 범위(안 제3조)

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를 준용함

다. 자원봉사등록 의무규정(안 제7조제7항)

자원봉사활동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임의규정인 “할 수 있다”로 개정코자 함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를 준용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.

제7조중 “등록하여야 한다”를 “등록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관실·과·소 | | 기획감사담당관실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일 안 자 | 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 | 기획감사담당관 백 윤기 |
| |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 | 의회법무담당 김 정식 |
| | 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 | 김 정식(820-2061) |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3조를 준용한다. |
| 1. "자원봉사활동"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·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. | |
| 2. "자원봉사자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| |
| 3. "자원봉사단체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| |
| 4. "자원봉사센터"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·장려·연계·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말한다. | |
| 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| 제3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. |
| 1.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| |
| 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 | |
| 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| |
| 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| |
| 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| |
| 6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| |
| 7.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| |
| 8.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활동 | |
| 9.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| |
| 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| |
| 11.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| |
| 12. 공영선거에 관한 활동 | |
| 13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| |
| 14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| |
| 15.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| |
| 제7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) | 제7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) |
| ①~⑥ <생략> | ①~⑥ <현행과 같음> |
| ⑦ ————— 등록하여야 한다. | ⑦ ————— 등록 할 수 있다. |